

구산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7월 회의록

□ 회의 개요

일 시	2022. 7. 26.(화) 19:00 ~
장 소	구산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방 법	대면회의
참석인원	주민자치회 31명- 고은자,공보영,김경미,김미경,김민정,김병완,김생두,노성호,,박춘기,방춘숙,안성민, 양정화,유해영,윤경석,윤만호,이상훈,이수형,이영길,이진숙,이호용,임종숙,정윤희, 조건창,채명화,최은자,최정숙,최현수,탁은정,한경훈,한덕순 (간사)이경진 (고문)기노만,박세은,(동장)고덕환,(담당주무관)박미현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회비에 관한 논의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진행의 건 ☐ 주민총회 의제 확정건의 건
안건 및 심의결과	<안건1> 주민자치회 회비에 관한 논의 - 원안가결 <안건2>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진행의 건 - 원안가결 <안건3> 주민총회 의제 확정건의 건 - 원안가결
회의내용	▶○○○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 이상훈입니다.반갑습니다. -참석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산동 주민자치회 7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회비에 관한 논의의 건입니다. 지난 6월 정기회의 후 각 분과별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회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칙을 만들어 봤습니다.그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부칙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네.분과별로 회의하는거를 제가 봤는데 회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사용처를 모르다 보니깐 조금 난해해서 저희가 부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1조,2조,3조는 그냥 넘어가고 제 4조 회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부칙설명===== ▶○○○사무국장 -위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위원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에 택배비,세탁비,수수료 이런것들 사업을 수행을 하면 들어가는비용인데 그걸 많지도 않은 회비를 가지고 물론 좋은의미도 있겠지만 제가볼땐 회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봤을 때 그 사업비에 관련된 집행되는 현금성 경비가 되었던 계좌이체가 되었던 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회계적으로 적정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현금성경비를 우선 지출을 하되 나중에 그 관련된 사업에서 다시 회비쪽으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회계적으로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네.그게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여기 넣은거고요,착불,택배비는 사업비에서 쓸수가 없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집행 기준이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괴산도 갔다왔지만 톨비나 주유비 같은거는 예산으로 쓸수가 없어요

회의내용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을 하는거고 그런거를 여기에 넣은겁니다.
카드결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좌이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논의하지 말고요 우선 찬반을 한다음에 그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회비를 건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네.찬성이 22분 이십니다.

▶○○○회장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손든 사람 없음)

네 저희가 31명 오셨구요 찬성이 22명으로 주민자치회비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장

-그러면은 제 4조 회비에 대해서 1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1항 회비는 10,000원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실까요?

▶○○○위원

-네에.없습니다.

▶○○○회장

-네 1항은 통과 됐구요.다음 2항의 1호에 대해 이의 있으실까요?

▶○○○위원

-없습니다.

▶○○○회장

-네 2항의 1호도 통화 됐구요.2항의 2호에 대해 이견 있으신 분 의견 내주십시오.

▶○○○위원

-애경사에 현금 100,000원을 지급 한다를 현금 100,000원 아니면 화환이던 화분 근조로 대신할 수 있다고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장

-이의 있으실까요?

▶○○○위원

-없습니다.

▶○○○회장

-보완하여 추가하여 넣겠습니다.다음 3호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원

-저는 이거 현금성 경비로 회비에서 쓰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비와 관련된 경상비 이런 성격이라면은 어떤 비용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은 사업비로 사용하는게 적정 한게 아닌가 그리고 구태 회비를 들어서 중요한 경상비를 썼더라도 나중에 그걸 사업비에서 회계적으로 받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런 시스템이 안되는거냐를 여쭙본거고 그게 안된다면 사업 관련해서 이 택배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수료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은평구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경직성 있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타동과 연계해서 풀 수 있으면 푸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회장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예요 이걸 바꿀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큰 집단이 바뀌줘야 하는데 우리가 바꿀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호는 이거 반대하시는 분 계실까요?

▶○○○위원

회의내용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소소한 택배비나 세탁비 수수료는 집행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유비하고 톨비는 이거는 여기서 내보내는건 아닌 것 같아요.아무리
그래도 그런거는 여기서 내보낼 수 없고 다른방법으로 써야 할거 같아요.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원씩 48명 해봐야 한달에 48만원인데 그런것들을 주유비나 큰 비용을 쓰는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런것들을 잘 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알겠습니다.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죽했으면 썼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왜냐면 어쩔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깐 보통 저희가 차를 대절하면 교통비에
주유비가 포함되야 한다면 기사 숙박비 포함되는 수가 있는데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썼었을수 있었을거같아요 그것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

-제가 예산은 관해서 지출을 하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장님이 대부분 지불을 하거든요 피치못할 사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어쩔수 없는거를 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항상 안전에 승인을 예산 승
인을 받고 지출하는거 만약에 예산을 8월달에 간다그러면 8월달에 톨게이트비, 주유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것도 찬성한다 생각해요

▶○○○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비 같은 경우가 엇그저께 과산 갔을 때 차량 주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그거는 말도 안되는거예요 그런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비용도 안주고 그런거
하라고 하는거랑 그리고 그 차를 내주면서 주유비를 안주는거는 말이 안되는거고 차를
대여했을 때 대여비로 결제는 되는데 주유비는 따로 결제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구청 차량이 있습니다.거기에 렌트가 되면은
차량비나 주유비 이런거는 공짜입니다.그거를 못 빌렸을 때 일반 버스를 빌려야지 행사를
하잖아요?그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는 워크숍 갈때는 구청버스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주유비를 쓸수
없다라고 했지 주유비가 나갔다고 말씀 드리진 않았고요 지난주에는 톨비를 냈었습니다.
근데 과산도 그냥 간게 아니라 사전 1주일 전에 사전답사를 갔어요 만약에 개인차를
가지고 간다면 답사는 구청차로 갈수가 없거든요 그럴때 주유비는 개인이 지불합니다..

▶○○○위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31명이 모여서 20명이 손을 들었어요.그러면 이런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48만원 모이면은 1년에 550만원 정도가 될거예요 그러면 1년 550만원
가지고 우리 경영진 한테 잘 처리를 해달라고 보고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순서
인거 같아요 회비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이렇게 내기로 하고 경영진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달라는거거든요 사무국에서 모두 고생하시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어디에 썼냐 이렇게
하지마시고 보고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하나 예시를 제시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거 같은데
같은 위원들 중에 사업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어요 같은 위원들께서 믿고 따라 주셨음
좋겠구요 만약 지출을 하게 되면 아마 투명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들을 믿고 뜻에

회의내용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네

▶○○○회장

-위원장 감사합니다.다른 또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

-앞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회비는 매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년 12월 별도의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가 3조 마지막 7항에 있습니다.보고를 할때는 정확하게 피치못할 필요한것들에 꼭 쓰시고 잘 하실거라 저는 믿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 주셨으니깐 기분좋게 잘 운영해주시기를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실까요?

▶○○○위원

-네.없습니다.

▶○○○회장

-네 그럼 3호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는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호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식비 1인 8,000원 초과분인데 이 초과분에 어느정도 금액까지인지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이거는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회장

-네 얼마로 정할까요?

▶○○○위원

-1인 8,000원에 초과 4천원 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안에 모두 찬성하시나요?

▶○○○위원

-네

▶○○○회장

-더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

-네애, 없습니다.

▶○○○회장

-네.그러면 4호는 통과시키겠습니다.

▶○○○회장

-다음 3항은 이의 있으실까요?

▶○○○위원

-없습니다.

▶○○○회장

-통과시키겠습니다.4항 이의 있으실까요?

▶○○○위원

-없습니다.

▶○○○회장

-4항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5항입니다.

관련사진

▶○○○위원

-없습니다.

▶○○○회장

-6항도 7항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

-네

▶○○○회장

-두 번째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잔행의 건입니다.

당초 주민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28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려 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만 결정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네

▶○○○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자료 참고===

▶○○○회장

-주민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건에 대해 질문 있거나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없습니다.

▶○○○회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장

-3번째 주민총회 의제 확정의 건에 관한 논의입니다.

안은 부서검토 결과 적정,조건부 적정 검토된 의제에 대해 실행분과를 결정한다입니다.

먼저 부서검토 결과에 대해 사무국장님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저희가 주민의제 하나 빼놓고는 다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거고 또 분과에서 나온 의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총회에 올려서 주민총회에 다 올리는게 맞겠죠? 다 예산안에 들어 왔으니깐..이거는 시간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시설은 구에서 하는거고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있는데 제안한 분과하고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안맞을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민총회 통과되면 이거를 우리 분과에서 하겠다 결정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할건 아닌거 같고 일단은 분과에서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분과별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네

▶○○○회장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네

▶○○○회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님의 안내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간사

===안내사항 전달===

▶○○○회장

-이것으로 구산동 주민자치회 2022년 7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20시 15분)

